

〈주요개념〉 결혼이민, 베트남 여성, 시민권의 미시정치학, 적응, 재생산성

## “한국인 아내” 만들기:

베트남 여성 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의 제도화

김지은\*

### 1. 연구개요

한국사회에서는 현재 언론과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들이 입을 모아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단언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이민<sup>1)</sup>이 위

\* 본고는 연구자의 석사논문(김지은 2007)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를 심도 있게 평하여주시는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르는 미진함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역량 부족 때문임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석사

- 1) 한국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였으나, ‘결혼 이민자’라는 국제적 용례를 따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6)되어 2005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방안’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공식적인 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5). 반면 외국인 배우자가 여성일 경우 이주가 결혼 선택의 중요한 맥락이 된다는 점, ‘이주’와 ‘이민’(migration)에 대한 번역 상 일관성 상실, 초국가적 성격이 강한 결혼 이주와 국적취득과 밀접히 연결된 이민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용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161). 그러나 ‘국제결혼’이라는 용어로는 연애힘, 등 다양한 형태의 여타 결혼을 아울러 결혼만을 목적으로 결혼중개를 통해 월경하게 되는 유형을 부각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영주권 규정이 까다로운(5년 이상 거주)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결혼이민(2년 이상 거주)의 경우가 국적취득으로 이어지는 ‘이민’ 경로라는 점(한건수 2006a: 196)을 인정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혼이민’, ‘여성결혼이민

장과 사기, 피해와 폭력 등의 개인적인 범죄문제를 넘어서 드디어 ‘국민’과 ‘국내’ 문제로서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다문화 가정’ 2세들의 적응 문제와 함께 외국인 어머니들의 언어 교육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주 희망자들의 교육을 담당할 현지 ‘한국문화원’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는 동시에, 결혼이민 후보자들의 에이즈, 정신병 등 건강진단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탄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배제’에서 ‘포함’으로 전체적인 여론이 이동하고 있는 바로 이 국면에서, ‘지원’과 ‘관리’의 언명들이 긴밀히 얽힌 채 결혼이민이 ‘국가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모든 욕구가 ‘적응’과 ‘통합’(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요리교육 등), ‘복지’(출산지원, 자녀양육지원 등)라는 화두로 환원되고, 결혼이민 관련 당사자들의 일상적 투쟁과 협상으로 얼룩진 삶의 현장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의 신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만이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본고는 결혼이민을 둘러싼 국가적인 당위 명제들이 실질적으로 관철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결혼이민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을 국민으로 수용하는 경로로서, ‘국민 만들기’의 어떠한 기획과 동의를 수반하는가? 둘째, 결혼이민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이루는 경로로서, 기존의 가부장제에 어떠한 변형과 지속을 반영하거나 유도하는가? 연구자는 특히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산업이 본격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시작되는 계기를 이룬 베트남 결혼이민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결혼이민의 제도적인 정착 과정 속에서 위에서 제기한 두 질문이 “한국인 아내”의 (재)

---

자, ‘결혼이민 가족’의 용어를 선택했다. 본 논문에서 ‘결혼이민’이란 결혼 자체를 목적으로 중개업소·종교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선으로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결혼을 가리키며, 개인들 사이의 연애혼 등 그 밖의 국제결혼 형태는 배제한다.

생산이라는 하나의 과제로 응축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즉,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인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과 몸가짐이 곧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으로 논해진다는 것인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우선 결혼이민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장의 역학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의 시민권 연구가 보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행위와 해석이 충분히 포함되어야겠지만, 이주민들의 주체적인 ‘전략’들에 관해서는 국내 인류학 선행 연구들에서 자주 취급되었던 반면 이에 가해질 수 있는 구조적이며 일상적인 제약에 대한 민족지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본고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후자에 두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자본(결혼중개산업)이나 국가(결혼이민정책)의 기획에 따라 꼭두각시와 같은 결혼이민 주체들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자 함은 아니며, 오히려 본고에서 검토한 맥락 속에서 이민여성들의 주체적인 실천들을 함께 조명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일 뿐이다.<sup>2)</sup> 우선 2절에서는 시민권의 개념적인 확장을 시도하게 된 이론적인 배경과 본 논문의 연구방법을, 3절은 결혼이민이 성행하게 된 정책적 배경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결혼중개업체의 ‘사후관리’를, 5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결혼이민의 제도화가 야기하는 효과를 다룰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시민권 연구의 선구자인 마셜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시민권은 “한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으로서 수여된 자격”으로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권리와 의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Marshall 1950: 14). 비록 마셜이 ‘공

---

2)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은(2007) V장의 논의가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동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화적인 발달로 가능해진 국민들의 다양한 권리들을 다루었는데, 그는 이를 크게 공민적 요소, 정치적 요소, 사회적 요소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8세기에는 언론·사상·종교·소유 등 법 앞에서 평등한 기회 및 사적 자유와 관련된 공민적 권리가, 19세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정치적 행위를 할 정치적 권리가, 20세기에는 교육·의료·주거·생활보조금 등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권리가 확보되었다. 그는 특히 시민권의 확장을 자본주의의 발달과 관련지으면서, 자본주의는 시민권의 공민적 요소와는 부합하지만 사회적 요소와는 충돌하게 되며, 앞으로 시민권 개념의 확대가 자본주의에 의해 제한될 것이라 예견하였다. 마셜의 연구는 지구적 자본주의의 등장 속에서 사회적 시민권에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제한들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선견지명을 보였지만, 사회계급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종족, 인종, 성별에 따른 차이와 배제의 원리를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즉 지구화로 인해 출신지가 아닌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무려 1억 9,100만 명<sup>3)</sup>에 이른 현재,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언어, 종교,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한 시민권 상 제한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인류학계에서 시민권 연구는 귀속의 기준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일상적인 행동과 사고 속에서 포함과 배제의 비공식적 양식으로서 작동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sup>4)</sup> 이는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의 성행으로 이어졌다. 인류학에서 문화적 시민권 개념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로잘도(Rosaldo 1994: 57)는 이를 “지배적인 국가 공동체의 규범에 있어 인종, 종족, 언어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이 권리로 인해 귀속할 권리, 즉 국민국가의

3) 이 수치는 국제이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의 2005년도 추정치로서, '외국 태생 거주민(foreign-born citizen)', 즉 출생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Circo 2006에서 재인용).

4) Ong 2004 참고.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다문화주의 테제로 삼았다. 한편 옹(Ong 1996)은 로잘도가 시민권을 마치 주체들이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동질적인 구성물로 정립했다면서, 국가와 주체 간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통해 국가가 성원권을 부여하는 차별적인 양식들을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시민권은 감시, 훈육, 통제, 행정 등의 근대적인 기획 하에서 동의를 생산하는 권력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시에 스스로 만드는(being-made and self-making) “주체화(subject-ification)”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문화적 시민권 연구는 국민과 국토에의 귀속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국가(와 국가의 헤게모니적인 형태들)와 이주민들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실천과 관념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옹은 특히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규범적인 행위와 정체성의 관리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제도와 사회 집단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차원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옹의 문제제기는 프리드만의 지적처럼 ‘문화’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해 ‘문화적 시민권’으로 지칭하는 바가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지만(Friedman 1996: 752), 점점 증가하는 이민자 집단을 상대로 푸코적인 관점에서 시민권의 미시정치학을 살펴볼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민자를 유입국에서 포섭하는 원칙으로서 다원주의 및 다문화주의의 등장은 단순히 정치나 법적인 제도만을 통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일상적인 실천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체화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김광익 2005: 81; 장정아 2002)는 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결혼이민을 조명하는 데 있어 옹의 방법론이 유용하다는 판단 하에, 더 나아가 시민권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비정치적’인 성소로서 규정되는 가족, 가내 영역(domestic sphere)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시민권에 있어 공/사 이분법과 사적인 영역의 배제는 여성주의자들로부터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시민권의 주장이 실상 남성

들의 활동공간인 공적인 영역에서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여성들의 활동공간인 사적인 영역을 비정치화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성주의를 주창하는 페이트먼(Pateman 1988)은 사회계약론자들이 ‘형제애(fraternity)’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추동한 프랑스 혁명은 실상, 아버지가 남성과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 사회로부터, 남성들이 여성을 사적 영역에서 지배하면서 공적·정치영역에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주의 여성주의자 드워킨과 맥키닌(Dworkin & MacKinnon 1998)은 국가가 사적 공간을 ‘시민’의 자유영역으로 간주하면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강간, 폭행 등의 폭력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폭력만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폭력 역시 자유주의 법적인 ‘정의’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사의 구분 자체, 사적 영역을 시민권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 여성주의적인 입장이다<sup>5)</sup>. 그러나 여성주의에서 시민권 연구는 가족을 복지가 제공되어야 할 장소로서 조명(Orloff 1993; O’Connor 1993)하거나, 정치권에서 가족관계가 이용되는 방식을 지적(Yuval-Davis 1997)한다는 정도로 제한적인 의미에서 ‘가족’을 논의에 포함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시민권의 의제를 공/사 구분을 넘어서 제기하려는 여성주의적인 입장이, 옹이 제기한 시민권의 미시정치학적인 분석과 결합할 때 한층 풍부한 인식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는 거주(F-2) 비자로 한국 사회에 발을 들인 결혼이민 여성들이 체류자(denizen) 자격을 지닌 채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이민 초기 1~2년의 기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가족’을 둘러싼 기획과 실천들이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구성하는 과정임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의 지평에 놓여 있다. 이 시기

---

5) “시민권에 관한 모든 비교 이론은 각기 다른 성별, 종족, 종교, 계급, 생애주기에 있는 시민들에게 할당된 개인적인 자율성을 가족, 시민 사회 조직과 국가 기관의 차원에서 모두 연구되어야 한다.”(Yuval-Davis 1997: 15)

결혼이민자들은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서 단지 사회적 권리를 누릴 뿐이며, 정치적인 권리는 부여되지 않고, 문화적으로는 풍속, 관습, 언어, 성별 역할 분담 및 지위 등에 있어 한국화를 표방해야 한다는 요청을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특히 결혼중개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분석이 이들의 공식적인 지침 상으로 드러나는 문구의 동어반복에 머무르지 않도록 농촌지역의 한 군을 선정하여 해당 행위자들이 실제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의 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A군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sup>6)</sup> 베트남 결혼이민을 지원하여 2005년 17쌍의 합동결혼식을 치른 바 있으며, 2006년에도 국제결혼지원사업 및 이주여성서비스를 중요한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두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결혼이민이 공신력 있는 결혼전략으로서 여겨져 현지인들에게 선호되기 시작하였다고 현지의 중개업자가 밝힐 정도로 공론화되었으며, 실제 결혼이민 건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는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A읍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6쌍의 부부와 적게는 1주일에서 2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심층면접을 했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따라 여타 결혼이민 가정, 이웃 주민 등과도 수시로 접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며, 군청의 단체교육 총 23회 중 7회(개회식, 한글교육 3, 사회극, 요리실습, 지역탐방)를 참여 관찰하였다.

---

6)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이른바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은 1990년의 ‘연변치녀·농촌총각 짝짓기’ 사업 이후로 빈번하게 있어 왔지만,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의 ‘조선족’이나 ‘고려인’을 상대로 ‘핏줄을 이어 단절된 역사를 회복’하는 “동족간의 결합”을 위한 시책으로서 제시되기 마련이었다(홍기혜 2000: 56-63 참고). A군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명실 공히 외국인인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농촌총각사업’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 3. 한국 내 결혼이민의 정책적 토대

인구 유입국에서의 이주민 통제 정책은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Kofman 2000: 30-31) 이주민의 수 뿐 아니라 이주의 경로를 제한하는 작용을 하기 마련이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이주 방식은 성별에 따라 현격히 달라지는데, 2005년 현재 체류자격별 등록 수를 봤을 때 단기취업(C-4) 중 65%, 산업연수(D-3) 중 88%, 연수취업(E-8) 중 92%, 비전문취업(E-9) 중 85%가 남성인 반면, 여성이 두드러진 부문은 거주(F-2) 중 76%, 예술홍행(E-6)<sup>7)</sup> 중 65%, 동반(F-3) 중 73%뿐이었다(통계청 데이터베이스). 이는 한국 경제 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책정되는 외국인 고용법과 비자 취득요건의 영향이 클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이래 비숙련 이주자의 계약노동 불허 원칙을 고수했으나 노동력 부족으로 1992년 산업연수생 제도로 2차 산업에서의 고용을 허가했고, 2004년에 이르러서야 고용허가제로 서비스 업종 취업까지 허용하였다. 여기에서 2004년까지는 남성 위주의 제조업분야 부문만이 허용됨으로써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저학력의 여성들의 이주가 더욱 제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불법 이주 및 체류라는 선택에서 더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야 했다는 점, 아울러 거주(F-2)/동반(F-3)비자 및 예술홍행비자(E-6)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선호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4년 이후 고용허가제 역시 이러한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는 음성적인

---

7) 예술홍행 비자는 인신매매 및 성매매산업으로의 유입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무부에서 관련 국가와의 협의 하에 특정 국가 출신의 특정 업종으로의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필리핀 여성에 대한 예술홍행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다가(2003년 2월) 2003년 6월부터는 예술홍행 비자 중 '유홍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 무회'에 대한 비자 및 비자발급 인정서의 발급을 전적으로 중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5급 이상의 관광호텔이나 고급 유원지 예술단에 계약·고용된 경우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발급 중지 대상을 '무회'로 한정하고 있어, 예술홍행 비자의 발급 자체는 2003년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현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데이터베이스 참고).



영역이 합법화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는 강화된 측면이 있어 현재로서는 이주여성들의 진입을 오히려 더욱 제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결혼이민이 이와 같은 이주 노동에 대한 법적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데 2003년 6월 예술홍행비자 중 ‘무희’ 비자가 발급 중단된 이후 동남아 지역의 결혼비자 신청 건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예나,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로 한국으로의 입국이 더욱 어려워진 중국여성들의 결혼이민이 크게 증가한 예(이혜경 2005: 88)가 그에 해당한다. 결국 외국인 고용법 및 비자법이 외국의 하층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적인 역할(거주·예술홍행·동반)을 수행할 때에 한국에 쉽게 받을 들이는 데 간접적인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권은 성별, 계급, 인종 등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주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지점에서 한국 내 결혼이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에 대한 통제가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증가를 도모하는 간접적인 요인이라면,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지원은 12.6%의 노년부양비, 47.3%의 노령화 지수(2005년 현재) 등의 수치로 구체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일찍이 국제이주통신원(SOPEMI)에서는 한국에서 1995년 인구 기준으로 2050년까지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순 유입 인구는 연간 129,000명, 부양 지수 유지에 필요한 순 유입 인구는 연간 102,563,000명으로 세계 최고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SOPEMI 2000; 스토킨 2004에서 재인용).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팽배한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의 관념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이민정책 도입을 유보시킨 채, 단기이주노동자의 유입만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부양 부담을 메우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허용된 이민 경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건수 2006a: 196).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자유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sup>8)</sup>에 의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화된 결혼이민통로를 이주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 및 이농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해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언론<sup>9)</sup>에서 자주 언급될 정도로 높은데, 행정기구 유지와 예산 확보(일반교부세)를 위해 ‘주민 사수’가 과업이 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은 출산장려금, 출산·유아용품 지원, 양육비 지원 등 여타 저출산 대비책과 함께 대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sup>10)</sup>.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다문화 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라는 제목으로 주최하였던 2006년 9월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한 경상북도 여성국장이 강조한 것도 결혼이민이 ‘저출산 고령화’, ‘이농으로 인한 농촌 붕괴’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이었는데, 이와 같은 발언은 관주도의 소위 ‘다문화’ 프로그램의 취지로 흔히 등장하기 마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장려책이 나오는 맥락은 단지 정책 입안자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떠나 결혼이민여성들이 들어오게 될 담론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서 ‘농촌총각장가 보내기사업’의 공론화 과정이 ‘베트남 여성’을 애를 낳아주러 온 사람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수용되어야 할 사람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8) 국제결혼중개업은 허가제에서 1999년 8월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바뀌었다.

9) “건강검진·장가보내기 등 ‘눈물의 사투’”; “인구 줄어 세수 감소 기구 축소 존립기 반 흔들”(주간한국 2005-08-24); “경북도, 인구 늘리기 대책 ‘부심’”(매일신문 2005-08-23); “지자체마다 ‘눈물겨운’ 출산장려책”(한국경제 2006-01-11)

10) “지자체 주민사수작전-건강검진·장가보내기 등 ‘눈물의 사투’”(주간한국 2005-08-24); “지자체마다 ‘눈물겨운’ 출산 장려책”(한국경제 2006-01-11)

#### 4. 결혼중개업체의 “사후관리”

##### 1) 결혼이민여성의 ‘환자’화

결혼이민 중개업 관련자들은 공통적으로 국제결혼사업의 경우, 국내결혼보다 이미지에 민감해서 혼인유지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선 결혼이민사례의 높은 이혼율에 대비하여 고안된 것이 바로 ‘사후관리’ 서비스인데, 이는 성혼 이후 통역, 중재, 한글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업체의 사후관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계약 전부터 강조되며, 믿을만한 업체의 기준으로 제시될 만큼 고객들로부터 요청되는 바였다<sup>11)</sup>. 지금까지 국제결혼관련문헌에서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는가는 거의 조명하지 않았는데, 연구자가 조사했던 A군에서는 모든 베트남 결혼 사례가 중개업체를 통한 것이며 이들 업체가 군내에 위치하여 일상적으로 결혼생활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결혼중개업체의 사후관리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들이 ‘전문가’로서 결혼생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제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다음의 한 중개업자가 밝힌 바와 같이 물리적 폭력이 개입되는 경우도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방식으로서 제시된다.

---

11) 2006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70~80%가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중 약 40%가 3개월에 한 번, 약 35%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약 20%가 6개월에 한 번의 빈도에 달했다. 서비스 제공방법으로는 전화상담이 60~70%, 직접방문이 10~20%, 한글교실 운영이 10% 정도로 꼽혔고, 만남의 이유로는 부부간의 갈등 조정이 40~50%, 고객의 사후 만족도 파악이 35%, 불만 사항 수렴이 10% 정도로 추산되었다(한건수·설동훈 2006: 59-61).

여기 보면, 신부들이 가끔 부인, 며느리 역할을 안 하려고 버틸 때가 있어요. 남편이랑 어머니랑 전화가 와서는, ‘큰일났다, 애가 집안에 계속 드러누워서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어떡하나’.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개네들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들놈도 21살인데, 개들이 21살에서 23살이에요. 내 자식 때리듯이, 가끔은 때려서 혼내야 한다고 봐요. 신랑 측에서는 노로한 부모뿐이니까 신부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대신, 때릴 때에는 신부의 부모와 통화해서 허락을 구해요. ‘당신네 애가 이리이러해서 지금 문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혼 보다는 때려서라도 같이 살도록 하길 원하거든요. 이러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때려서 반성하도록, 각성문을 쓰도록 하면, 그 뒤로 절대로 이런 문제가 없어요. 관심을 그만큼 가져주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생각하는구나’ 해서 충격요법이 통하는 거예요. 때려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6개월 이내의 5~6% 경우가 그렇고, 그 이후는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때릴 필요가 없어요.<sup>12)</sup>

우리는 여기에서 증상의 심각성을 진단하고(‘극단적인 경우’), 원인 규명(‘버릇이 나빠서’) 하에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적절한 처방(‘때리기’)을 내리는 일종의 병리적 치료과정의 초보적인 형태를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일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상정된 ‘건강한(정상적인)’ 가족/여성에게 결혼이민여성을 끼워 맞추려 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는 결혼이민여성을 모종의 ‘환자’로서 대상화하는 과정을 연상시킨다. 결혼이민 가족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당사자들은 환자 자신이 그의 병에 대해 무력한 만큼이나 무능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 업체 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년간의 경험적인 자료를 지녀 결혼이민생활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당사자들보다 정통한 중개업체 측은, 해당 여성/가족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등장한다. 이들의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 결혼이민여성들은 ‘환

---

12) 이 인터뷰 자료는 연구자가 보조연구원으로서 동석하였던 보건복지부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프로젝트 중 수집된 한건수(2006b) 미발간 면접자료의 일부로서 저자의 허락 하에 수록하였다.

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어떤 수치로 표현(결혼 초 6개월이라는 기간 내 5~6%라는 발병률)될 수 있는 케이스로 환원되며 개개인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개별적인 부부, 가족 관계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은 무시된 채, 드러나는 증상에 따라 일괄적인 처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위 사례처럼 도시에 위치한 대형업체본사의 경우 항시적으로 대기 중인 통역사를 채용하고 정기적으로 전화 연락이나 방문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체계화된 사후관리의 면면을 더욱 투명하게 드러내주는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방의 지사나 중소기업체들의 사후관리 역시 비슷한 작동효과를 노리고 있다. 연구자는 A군에 머무는 동안, 대형업체 지사의 실장, 개인업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덜 공식화된 사후관리만 접할 수 있었는데, 이는 덜 권위적이지만 훨씬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곳곳으로의 전면적인 접근으로 보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결혼이민여성이든 남편 측에서든 중개업체 측에 대한 의존도는 도회지보다는 이와 같은 소규모 농촌 사회에서 더욱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신혼시기 난관에 대해서는 중개인의 중재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었다.

## 2) 전문가의 '처방'과 '예방책'

[사례] 2006-08-12 A군 B면.

밤 12시 '왕'의 시어머니로부터 응급호출을 받고 출동한 중개업자 최지혜, 그리고 통역을 맡을 끼우와 남편 최민규와 함께 찾아간 신혼집.

최지혜: 어머니, 그러면 문제가 뭔지, 문제만 말씀해보세요.

시어머니: 아니, 집에 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새벽부터 나가서 들에 일하고, 점심 먹고, 밤까지 허구 돌아오면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빨래도 안 해놓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등. 소 죽도 맥이고, 개 밥도 주고, 마당도 쓸고 ..., 아니 내가 옛날에 다 갈겨줬는데, 다 할 줄 알면서 꼼짝도 안 해. 집안에 청소도 하나도 안 해놓고, 걸레질도 허라 그러면 시늬만 하고.

최지혜: 에이, 그런 건 어머니가 하나하나 아르켜줘야 알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돼요.

시어머니: 내가 다 갈켜 줬어. 소 죽도 이렇게 맥이라, 다 보여줬어. 빨래도 조금만 있을 때 돌리면 안 된다, 씻을 때는 다음 사람이 들어가면 신발에 물이 있으니까 신발은 위에 올려놓고 씻어라, 근데 하나 해요? 밥도 점심 때 됐으면, 미리 채려놓고 있는 뺨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어른이 밥을 자셨는가도 궁금해도 안 해요. 어른이 들어왔으면, 진지는 잡셨는가, 물어봐야 되잖니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채려주지도 안 하고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어디 한 번 물어봐줘요. 나를 무시하는가 하고.

최지혜: 그런 게 아니라, 하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근데 지 방은 뭘 그렇게 열심히 닦는데요? 지 빨래는 왜 그리 잘 하는 건데요? 안 그럼 내가 말을 안 하지.

최지혜: 뭐, 하여튼, 알았고, 그러면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적은 것을 확인하면서) 밥 시간에 제대로 차려놓고, 소랑 개 먹이고, 빨래도 쌓아두지 말고 하루에 한 번 돌리고, 그러면 돼요? 끼우, 알아들었어? 그거 통역해줘.

중개업자, 통역인 등과 함께 찾아간 이 집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등을 돌린 채 중개업자의 얼굴만 주시하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을 못볼 터지듯 쏟아 내었다. 그리고 위의 대화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한대로, 통역이 끝난 뒤, 중개업자는 이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연락을 달라면서 상황을 종결지었다. 위 대화에서도 드러나듯 중재 요청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 전에 이루어지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대화랄 만한 것은 오로지 중개인과 통역인을 매개해서 이루어질 뿐이었다. 그렇지만 중개업자의 ‘중재’의 목표는 실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전달 과정에서 며느리의 노동량, 어른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해 삶의 전반적인 자세를 겨냥한 시어머니의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요구가 몇 가지 사항의 측정 가능한 형태로 합리화되고 있었다. 그렇게 고부간 이해 정도이나 소통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채, 둘 사이의 근본적인 입장 차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이 며느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지시 사항들로 환원되며, 관건은 며느리가 그것을 준수하는

가로 수렴되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개업체의 중재는 고객, 즉 남편과 시어머니 측의 요구를 단순히 드러낼 뿐 아니라 조형해낸다고도 할 수 있겠다. 즉, 결혼이민여성이 준수해야 할 일정한 원칙들을 정립하고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또한 그녀들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것이다. “방향을 잘 잡아 주어야” 한다든가,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잘 해주면 신부가 알아서 안 하니까, 미리 처음부터 일부러 일을 시켜야” 한다든가 중개업자들은 선행 사례들을 통해 축적된 식견을 바탕으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한 방침들을 제시한다. “혼자서 소풍 다 치우고, 뒷밭에 옥수수, 고추 심고, 신랑이 장애가 있는데도 말 잘 따르는” 경우에서부터 “가출하고자 이불공장에서 일하던 걸 데려와 신랑이 설득시키는 사이 또 도망간” 경우에 이르기까지 극에서 극을 다 겪어본 중개업체 측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분포도, 예상되는 궤적에 대한 감각을 통해 일종의 3차원적인 좌표를 그릴 수 있는 듯했다. 즉 결혼이민자들의 행위와 태도(x축)에 대해 결혼생활에의 적응도·순응도(y축)를 측정하고, 그것이 시간(t축)에 따라 어떠한 경로를 그려나가는 것이 ‘정상’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여성들이 결혼 후 몇 개월에 어떠한 행위나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나치게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하면 안 된다, 과잉보호하면 안 된다는 류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제가 반드시 어떤 명시적인 방침들 뿐 아니라 업체 측의 설득과 관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이하의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다.

### 3) 전문가의 ‘설득’과 ‘관리’

[사례] 2006-02-19 L시에서 뽕땡의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김인석은 하객으로 들렀던 린네, 호야네 내외를 근처 다방으로 이끌었다.

호아: (김인석이 웨딩 촬영에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를 만지면서) 얼마?

호아 남편 박석현: 에이, 이거 비싸. 100만원.

호아: 100만원? 에이~

연구자: 요즘에는 30만원, 40만원 정도해요.

김인석: 왜요? 이거 사고 싶어요? 이런 거 좋아해서 큰일 났다. 호아 씨, 저축 알아요? 돼지 저금통에 넣는 것은, 저금, 은행에 넣는 것은 저축. 한국에 와서는 저축 많이 해야 돼요. 이거(카메라) 지금 30만원. 애기 나중에 낳으면, 애기 분유가 한통에 2만원, 처음에는 3~4통, 나중에는 6통씩 먹어야 해요. 그러면 분유 값이 얼마? 12만원. 그리고 또 기저귀 값, 한통에 만원. 그리고 애기 아프면 병원 가야죠, 애기 옷 입혀야죠, 그러면 한 달에 키우는 데 얼마? 30만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호아: 호아, 애기 없어요.

김인석: 지금은 없지만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베트남에 있을 때, 돈 있으면 써, 티비 사, 그랬죠? 베트남에서도 도시에서는 저축해요. 한국에서는 돈 있을 때 저축해놔야 돼요.

[사례] 2006-02-19 L시 ○○○ 예식장 김인석 인터뷰

“저기[하객으로 온 린]도 임신 3개월, 오늘 결혼하는 집도 임신 3개월이에요. 임신도 신뢰의 문제예요. 어떤 집에는 보면 신부가 몰래 피임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색시가 불안하면 피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소개한 집은 전부 결혼한 지 한 두 달 만에 임신했다는 건 그만큼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위 사례들에 등장하는 중개업자는 시시때때로 결혼이민여성들을 방문하면서 밀접한 조언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는데, 그가 가장 힘주어 역설하는 것이 ‘아이가 희망’이라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메시지는 첫 사례에서처럼 끈기 있는 설득의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선진화’된 삶의 방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원천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동시에 여성들로 하여금 이기적인 욕망을 자제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연구자와 초면 시에는 베트남에서 미처 받지 못한 대학교 교육을 한국에서 받고 싶다는 뜻을 수줍게 비추던 한 여성은 중개업자를 통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전해



들은 연후에는 ‘에이, 우리 효진이 대학교 가야지, 나 대학 가 안 돼지.’라며 자조적으로 읊조리기도 했다. 물론 중개업체 측의 방침과 조언들이 여성들에 의해 어떻게 변형되거나 굴절되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의도들이 여성들을 에워싸고 있으며 그녀 자신들이 이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 중개업체 측, 특히 당사자들과 수시로 교류하게 되는 현지 중개인들은 각 집안의 사정, 갈등의 정도와 원인, 부부싸움의 횟수에서부터 피임 여부에 이르기까지 내밀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결혼 이민여성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웬만한 정보가 중개업체 측으로 흘러 들어가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이민성과 그 가족에 대한 외부의 시선과 개입은 중개업체 측에 한하지 않는다.

## 5. 정부의 “복지 서비스”

###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결혼이민만큼 정부의 개입이 빈번하고도 공공연하게 요청되는 장도 드물 것이다. 미디어에서 결혼이민과 관련한 가정폭력 피해, 위장·사기결혼, 문화 부적응, 외국인 및 혼혈인 차별, 언어능력 등의 문제들을 조명할 때 어김없이 따라 붙는 것도 정책적인 지원이나 규제,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연구자가 접했던 결혼이민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었는데, 결혼중개업자는 물론, 결혼이민가족 등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토록 당위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결혼이민이 ‘국민’의 생산과 직결된 ‘국가’의 문제라는 암묵적인 전제와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인종”, “유전인자”의 유사성은 중개업체에서 결혼이민을 홍보하기 위해 유포했던 ‘정보’로서 애초 남성들의 국제결혼을 유인하는 계기를 이루고 있던 바,

특히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의식 속에서 국민(민족)의 재생산을 책 임진다는 논리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남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피부가 까 무잡잡’하지 않고, ‘곱슬머리’가 아니라는 항변을 들어, ‘코시안’ 등의 용어로 필리핀 등 여타 국가와 뭉뚱그려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 곤 했는데, 이처럼 ‘양질의 국민’을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정부지원 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논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즉 국제결혼이 ‘국민 (민족)’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와 지원 으로서 국민(민족)의 혈통과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결혼이민 관 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결혼중개업자, 결혼이민자의 가족들이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차원에서의 각종 지원책들이 받아들 여지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의 출범 이래로 ‘외국인’과 ‘결혼이민’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정부 각 부처 별 정책 추진으로 많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 들은 시기적으로 결혼이민의 핫수가 평균적으로 긴 중국, 일본, 필리핀 여성들에게는 늦은 감이 있는 반면, 베트남 여성들의 유입 시기와는 맞 아 떨어지면서 수혜자로서 베트남 여성들을 더욱 가시적으로 만드는 경 향이 있다. 각 부처별 지원책<sup>13)</sup>이 산발적으로 등장하던 가운데 마침내 2006년 6월 28일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기로 공 표하면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가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한 상태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중장기 계획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결혼이민자의 전국

13) 2005년 후반기부터 관련 정책을 논의한 정부기관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 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이 있다.

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인데, 그 구심점으로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연계된 지원망을 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가 접할 기회가 있었던 6~8월간의 ‘결혼이주여성 적응교육’도 A군이 2006년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운영 사업 지원대상군으로 선정되어 43,000,000원의 예산을 지원받음에 따라, 군청 여성회관의 자리에 들어선 결혼이민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교육은 M경북연구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약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선보이기로 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의 한 과제로 실시되었는데, 이주여성들의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천명하고 있었다. 대구 계명대학교와 한국디지털대학교로부터 강사진을 제공받아 전문성을 갖추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극, 미술활동, 요리실습, 지역탐방, 성교육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3시간씩 주 3회로 총 24회가 베트남반(약 30명), 혼합반(약 4명)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같은 기간 내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대구경북 결혼이주여성 가족캠프’ 행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결혼이민가족들의 참여가 장려되었으며,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국디지털대학교에서는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료 온라인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실상 시민단체의 부재로 인해 A군에서 결혼이민여성이나 가족들이 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이러한 관주도적인 프로그램뿐이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통지문 발송과 군청/면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의 전화 연락을 통해 해당 가족에게 직접 통보되었고, 단체교육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개업체들 측의 제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베트남 결혼이민가족들은 되도록이면 참여하는 것

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심지어 교육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결혼이민가족들 역시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개회식에 참석하여 한국어교재만큼은 받아가기도 할 정도로 참여율과 관심도는 높은 편이었다 할 수 있다.

## 2) 결혼이민여성의 ‘학생’화<sup>14)</sup>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이처럼 한글교육, 요리강좌, 한국문화체험 캠프 등의 ‘적응’ 프로그램들에 한정되어 있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과 그로 인해 이들이 겪는 역경을 시정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제시한 해법이 이들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도모하는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들인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6개소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한 뒤 평가하는 2005년의 보고서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기대효과를 <표 1>과 같이 밝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업의 핵심에 외국인의 한국(인)화 표방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적응’, ‘정착’ 등의 용어는 자연환경처럼 불변의 주어진 조건으로서 ‘한국사회’라는 모티프를 공통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을 한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되고 있다. 이 정언명제 앞에서 한국사회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닌 상호작용하는 인간들의 관계망이라는 점은 망각되고 있으며, 오로지 결혼이민자들을 한국사회에 알맞게 조형하는 문제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

14) 선행된 연구에서 비슷한 논의로는 한건수(2006a: 221-224)가 있다. 한건수는 결혼이민자들이 남편이나 시부모, 이웃들에게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살림권이나 경제권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 속옷이나 생리용품까지 남편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아이 취급’이라고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특히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며, 동년배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부각시키고자 ‘학생화’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표 1〉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교육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게 하며,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문화교육과 생활교육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고 융화되어 가족해체의 위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을 통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산전산후지원과 육아교육지원은 이들의 모성과 아동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 사이에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며, 이를 지원하는 단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남성들과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꾸려내고 아기를 낳아 키우며 건강한 가족을 형성해 나가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한국사회에 다문화 가족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한국 여성들의 상호연대를 통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출처: 여성가족부 2005: 11-12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여성’의 복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맥락은 종종 중개업체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을 논하는 자리가 되며, 국민국가의 경계를 관리하는 현장이 된다. 현재까지 제공되는 지원 사업만으로는 위 발의안에서 등장하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정부는 다문화주의보다는 동화주의 정책을 공표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적응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수용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가를 넘어서 교육현장이 제공하는 가능성과 상상력을 포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어떠한 주제로 거듭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한다.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의 교육은 해당 여성들에게 있어서나 그녀들의 적응을 원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나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로 여겨지기 마련이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장이 제공하고 있

는 것은 표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넘어선다.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결혼이민여성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모인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그녀들이 본인 이름, 남편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병기된 명단에 등록되는 순간부터, 담당 교사와 군청 복지 담당 직원에 의해 출결 사항이 파악되고 성적과 성실도가 평가되는 학생 집단이 탄생하는 것이다. 교재를 안 가져와서 눈치를 보거나, 때로는 가르쳐주는 걸 계속 익히지 못해서 좌절을 느끼고, 지목을 받고 일어나서 문제의 답을 알아맞히는 교육의 과정은, 이를 관찰하는 교사는 물론 그녀들 스스로도 ‘학생’과 동일시하게 되는 일종의 역할 게임이 된다. 그리고 이 게임은 누가 한국어 표현을 더 정확히 하는가, 한국음식을 더 잘 만드는가, 한국문화에 정통한가를 겨루고, 그 결과를 교사와 학생들이 공적으로 확인하는 ‘판’을 형성한다. 연구자는 이 판에서 그녀들이 학생으로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나서야 할 때의 ‘쑥스러움’, 칭찬받았을 때의 ‘뿌듯함’, 잘못했을 때의 ‘부끄러움’을 나누며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을 보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그들을 이간시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들의 ‘학생’화는 “베트남인들이 필리핀이나 일본에 비해 시끄럽고, 집중을 못 하는 편” 등의 평가를 받는 하나의 집단이자, 그 안에서 개별적인 성적에 따라 “유이는 말이 많아”, “뤼는 한국 온 지 얼마 안됐는데 금방 따라하네요”라는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 비교 가능한 개인들의 집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으로서 이들의 소수자적 입장은 서로에게서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운명애를 발견하도록 이끌기 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확인시켜주는 자화상이자 동시에 비교상대라는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의 장은 여러 맥락에서 학습자들에게 집단적인 열등감을 내면화시키면서 자신들 내부의 우열을 가리도록 하는 외부적인 시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3) 사생활의 공론화

단체 적응교육이라는 것은 전술되었던 공식적인 수업 시간의 교사-학생이라는 세팅 외에도, 수업 전후와 쉬는 시간 동안 교사, 군청 복지과 직원, 기자 등과의 비공식적인 조우를 수반한다. 교사와 담당직원은 되도록 교육생들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가족의 안부를 묻는 등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그에 따라 파악된 각 교육생의 집안 사정이나 한국어 실력을 참고하여 취재 나온 기자들과 인터뷰를 주선하거나 행사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었다. 군청의 교육을 통해 매개된 한국인 교사나 군 직원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의 만남은 대개는 피상적이거나 단편적인 대화가 오고가는 정도에 그치지만, 교육의 콘텐츠를 넘어서 그 형식이 제공하는 논리를 일상으로 확장시키는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조언을 하고 정정해주는 한국인과 보살핌을 받고 관리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을 순차해야 할 대상으로 고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수시로 오고가는 상황이 연출됨을 의미한다.

[사례] 2006-06-22 A군 읍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앞 복지담당 직원과 끼우의 대화

복지담당 직원: 얘기 있죠?

끼우: 없어요.

직원: 어? 왜 없어요? 지난번에 있었는데..

끼우: 아, 친구 얘기.

직원: 어... 그럼 자기는? 자기는 왜 얘기 없어요. 빨리 나아야지.

끼우: 배 아파요. 병원[에서] 자궁 혹 수술했어요. 얘기 없어요.

직원: 어머... 그럼 어떡한다. ... 그래도 아픈 거 나오면 낳을 수 있죠?

끼우: 네...

직원: 응, 빨리 나아서 얘기 낳아야지.

위와 같은 대화는 어떤 고의적인 의도보다는 관심을 표하고자 하는

단순한 선의를 담고 있는 것이며 극히 순간적인 계기를 형성하는 데 지나지 않지만, 이와 같은 계기들이 축적되고 증첩되는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즉 결혼이민여성들의 사생활이 공론화되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특수하게 상정된 ‘정상성’으로의 회귀에 대한 공적인 압력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군청직원이 온정을 베푸는 본 대화도 은연중에 아기를 최대한 빨리 낳는 것이 결혼이민여성의 당연하며 정상적인 절차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인데, 결혼이민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화가 군청직원, 교사, 마을주민 등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회적인 ‘관심’과 ‘참견’을 넘어선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알선으로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단체결혼이민의 경우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컨대 일본에서도 필리핀 신부 환영식 때 마을 이장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체온계와 출산 가이드북을 나눠 주며 “감기 조심하시고, 빨리 아기 가지세요.”라고 한다든가(히가시 이아야마손(東祖谷山村)<sup>15</sup>), 가족이나 마을사람들이 “어제는 어땠어? 임신한 것 같아?”라며 반복적으로 확인한다든가(아마가타 현(山形県)의 오오쿠라무라(大蔵村)<sup>16</sup>)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결혼이민여성들의 결혼 초기 높은 출산율<sup>17</sup>은 결혼했으면 최대한 빨리 아기부터 낳는 것이 ‘정상적인’ 가족의 주기임을 환기시키는 공적인 압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가족주기는 실상 현재 저출산·만산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전형적인 모델이

15) 景山昌平 편(1988) 『アジアから来る花嫁たち: 村の国際結婚』, 東京: 南船北馬舎, p. 52(Suzuki 2003: 404에서 재인용).

16) 桑山紀彦(1995) 『国際結婚とストレス: アジアからの花嫁と変容するニッポンの家族』, 東京: 明石書店, pp. 37, 85-96(Suzuki 2003: 404에서 재인용).

17) 특히 아마가타 현의 오오쿠라무라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의 48%가 결혼한 지 1년 이내에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桑山紀彦, *ibid.*: 37), 이 비율은 연구자가 접했던 A군의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 사이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A군청의 자료에 따르면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으로 2005년 9월 입국한 13명(가출자 3명 제외) 중 2006년 2월 현재 임신 8명이었으며, 그 외에 연구자가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한 26명의 여성 중 18명이 입국 1년 내, 그 외에 3명은 그 이듬해 첫 아이를 출산하였다.



아니라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집단에게만 특수하게 강요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규범은 가족이나 마을주민,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연민이나 호의, 관심이 ‘결혼이민여성’이라는 하나의 집단에 집중하는 가운데 탄생한 것이다.

더구나 A군청은 2005년 직접 지원했던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던 터였다<sup>18)</sup>. 해당하는 16명의 여성들이 입국한 이후부터, 합동결혼식을 시작으로, 실과소별로 한 가정씩 자매결연을 맺어 1달에 1번씩 방문상담하고, 군청에 소집해 단체부부상담 및 군수와의 오찬을 주선하는 등 크고 작은 프로그램 속에서 ‘베트남 새댁’은 지역적인 명사로 떠올랐다. 군청의 직원들 사이에서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정보는 공적인 지식으로 통용되고 있었는데, 특히 복지과 직원들은 부부의 상담내역, 임신 현황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부부싸움의 빈도나 내용까지 꿰고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군청의 수주를 받았던 중개업체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업체보다는 군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군청의 개입 자체에 대한 커다란 반발은 없는 편이었다. 따라서 군 사업을 통해 결혼한 가족들에게 있어서 군청의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중개업체의 사후관리와 같은 작용을 하고 있었던 셈인데, 군내 결혼이민사업에 대한 호응도와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여타 결혼이민가족들에게 그 혜택을 확장하는 과정은 동시에 관리대상을 포괄적으로 포섭해나간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6. 결론

본고에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민이라는 이주 경로가 한국

---

18) “농촌총각 베트남 현지결혼식마치고 귀국 — 농업인 16명 합동결혼식 예정대로 마쳐”(A군청 주요뉴스 2006-06-15);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 합동결혼식 개최 — 26일 11시 ○○양공장에서 16쌍 백년가약”(A군청 주요뉴스 2006-11-28)

에 정착되면서 마련된 제도적인 장치들이 분석 상 초점에 놓여있었다. 그에 따라 갖가지 공적인 기획들이 가할 수 있는 제약이 부각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인 제약들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서 절대적인 감시의 빈틈없는 구속으로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본고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결혼이민이 이주여성들에게 마치 환자나 학생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역할극 무대를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환자나 학생이 병원/학교나 의사/교사의 지침을 자동으로 내화하지 않는 것처럼, 결혼이민자들 역시 각종 적응 기획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기도 하고, 오해와 재해석을 통해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통역자가 동석하는 “사후관리” 시간을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요구들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거나, 군청에서 마련한 한글교육 시간을 통해 모인 친구들과 모처럼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일은 다반사이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능력, 한국에서의 생활 노하우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시대보다 자신과 고국의 친정가족을 우선시하고 친정으로의 송금과 비자금 마련을 위해 집안일(재생산 노동)을 뒤로 한 채 취직(생산 노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적인” 행위나 태도에 대해 공적이며 명시적으로 제공되는 여타 참조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파악하게 된 자격조건에 맞추어 자기검열하기 마련이며, 법적인 국적획득의 절차와는 별도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통과의를 정상규범으로서 당연시하게 된다. 그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을 낳아야 하고, 자녀들의 사회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불문율로 여겨지고,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이를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책과 열등감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배타적인 국적법으로 인해 외국인이 손쉽게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된 결혼이민은 그 법적·제도

적·문화적 체계로 인해 특정한 방식의 주체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시민권의 미시정치학적인 고찰이 제기할 수 있는 이 점은, 시민권이라는 것이 단지 법·행정적으로 규정되는 차원 뿐 아니라, ‘누가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경합과 합의의 과정이 순환하는 일상적인 차원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웅(1996)이 미국의 이민자 집단의 경우 사회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적 훈육의 결과로 ‘인적 자본’으로서의 생산성이라는 기준이 시민권 구성에 포함되어있음을 밝혔다면, 본 연구는 한국의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우, 한국 국민을 낳고 기르는 능력과 노력, 즉 재생산성 기준이 시민권에 결부되어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고도로 상품화(그리고 합리화)된 결혼이민경로를 제공하는 국제결혼중개업, 불법체류이주민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발달한 체류법/국적법, ‘적응’을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앙/지방 정부 등은 각각의 의도와 기능은 다르지만 교묘히 얽혀 결혼이민여성은 한국인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때에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역할은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정의된 역할이며, 한국인 여성에게는 더 이상 노골적으로 강요되지 못하는 헌신을 포함한다. 연구자는 수 개월간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당위 명제들이 결혼이민자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양산되고 통용되며 수용/반박/재강화/재설정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결혼이민의 제도화가 야기하는 효과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여 결혼이민 주체들의 행위성을 잘 담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서술상의 한계일 뿐 시민권의 미시정치학적 연구가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민 당사자들의 일상적인 갈등과 조정에 대한 분석이 추후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참고문헌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2006 『다문화 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한국, 대만, 베트남, 일본에서의 경험』,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김광억 편

- 2005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김지은

- 2007 “적응과 세력화의 경계에 선 “외국인 아내들”: 농촌 지역의 베트남 결혼이민자 사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김현미

-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하나의문화.

설동훈, 김현미, 한건수

- 2005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중개업자』, 보건복지부.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2005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이해경

-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장정아

- 2002 “타자로서의 이주민: 홍콩의 중국본토 이주민”, 『비교문화연구』 8(2): 37-78.

- 2003 “‘홍콩인’ 정체성의 정치: 반환 후 본토자녀의 거류권 분쟁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5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피터 스토커

2004 『국제 이주』(김보영 역), 서울: 이소출판사.

한건수

2006a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2006b 결혼중개업체 면접자료 미간행.

한건수, 설동훈

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홍기혜

1999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논문.

Circo, Iulian

2006 “Migration and Human Rights,” 『이주와 인권 국제포럼』, 국가인권위원회.

Dworkin, Andrea & Catharine Mackinnon

1998 *In Harms Way: The Pornography Civil Rights Hearings*, Harvard University Press.

Friedman, Jonathan

1996 “Comments,” *Current Anthropology* 37(5): 752-753.

Kofman, Eleonore Annie Phizacklea, Parvati Raghuram, Rosemary Sales

2000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Employment, welfare and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Connor, Julia

- 1993 "Gender, Class and Citizenship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 Regim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3): 501-18.
- Ong, Aihwa
- 1996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Making: Immigrants Negotiate Racial and Cultural Boundarie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37(5): 737-762.
- 2004 *Citizenship. In A Companion to the Anthropology of Politics.* J.V. David Nugent, e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 Orloff, Ann
-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03-28.
- Pateman, Carol
- 1988 *The Sexual Contract.* Cambridge: Polity Press.
- Piper, Nicola and Mina Roces, ed.
-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Rosaldo, Renato
- 1994 "Cultural Citizenship in San Jose, California," *Polar* 17: 57-63.
- Suzuki, Nobue
- 2002 Gendered Surveillance and Sexual Violence in Filipina Pre-migration Experiences to Japan. In *Gender Politics in the Asia-Pacific Region.* P.T. Brenda S.A. Yeoh, Shirlena Huang, ed. Pp. 99-119. Routledge International Studies of Women and Pla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2003 "Transgressing "Victims": Reading Narratives of "Filipina Brides"," *Japan, Critical Asian Studies* 35(3): 399-420.
- Yuval-Davis, Nira
- 1997 "Women, Citizenship and Difference," *Feminist Review* 57 (Autumn): 4-27.

<key concepts>: marriage migration, Vietnamese women, the micro-politics of citizenship, assimilation, reproductivity

## The Making of “the Korean Wife”: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arriage Migration in the Cases of Vietnamese Women

Kim, Jieun\*

The main aim of this article lies in examining the structural dynamics of the marriage migration regime, using an ethnographic case study of the Vietnamese marriage migrants in Korea. This article suggests that studies of ‘citizenship’ can benefit from broadening the topics from the legal-political aspects to the everyday micro-politics of negotiating the qualifications of citizens. In this article, the increased openness of policies presented in the simplification of the naturalization for marriage migrants and larger budgets allocated for them, was overwhelmed by everyday imperatives of ‘assimilation’ justifying the public intervention into the private sphere to reassure migrant women’s internalization of Korean patriarchal values and gender roles. “The After-Sales-Service” offered by the matchmaking agencies and the social welfare

---

\* M.A. in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rvice managed mainly by the municipal governments, formed a public pressure on the migrant women to internalize certain values and roles in order to acquire a full Korean citizenship. Whereas anthropological literatures on marriage migrants' subjectivities and agency focus on the individuals' voices narrating their inner experience, this article suggests that more cautious investigation on the structural space permitted to the subjects is needed to fairly appreciate the subversiveness or limitations of their practices.